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 등 교 육 기 관 의 평 가 · 인 증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평가·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알리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시 평가 대상 학교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 2) 이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본 조의 신설로 인정기관 공백 시에도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았던 대학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지속되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 2)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 3)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영 제6조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등의 중대한 변화나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등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인정기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이를 통해 대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부 인정기관에서만 자체 규정을 통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최초로 평가·인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동안 해당 학교가 받은 기존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7항 중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를 “변경할 때에는”으로, “알려야”를 “미리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u> <u>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u> <u>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u> <u>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u> <u>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u> <u>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u> <u>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u> <u>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u> <u>우,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u> <u>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u> <u>이 최초로 평가·인증을 수행하</u> <u>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u> <u>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u> <u>장되는 것으로 본다.</u>
<u><신 설></u>	<u>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u> <u>·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u> <u>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u>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u>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u> <u>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u> <u>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u> <u>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u> <u>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u> <u>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u>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⑥
(생략)

⑦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변경할 때에는 -----

----- 미리 알려야 -----
----- .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